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정관

[정관 제1호, 2021. 08. 27. 제정]

[정관 제2호, 2022. 02.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5. 공공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관리
6. 각종 문화공연·축제 추진 및 지원
7.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8.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10.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11.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산업 활성화
1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의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회를 소집 및 이사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재단 설립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표이사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구의 재단업무 소관 국장
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장 <신설 2022. 02. 1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선임직으로 하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③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7명, 비상설로 하되, 구청장과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각 2명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문화예술·관광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
2. 4년제 대학 문화예술·관광 관련학과 교수
3. 문화예술·관광분야 관련 법인·기관 시설의 장 및 임원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6.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 시까지로 정한다.

⑤ 재단의 임직원 및 구의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위원회는 이사 임기만료 또는 그 외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 자체 없이 구성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자를 심사하여 이사장에게 임원후보로 추천한다.

⑩ 이사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자체 없이 재추천 해야 한다.

⑪ 임원 후보의 선정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선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새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징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해 임원을 직위 해제, 징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였을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 할 수 없다.
- ③ 이사회에서 임원의 징계를 심의할 경우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구의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재단의 조직 및 정원 규정에 의한 직제 순서에 따라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제17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대표이사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 · 처분 ·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 · 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 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당시 구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3.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재산
4.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5.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 수익금 등

④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와 같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은 결산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 모집·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02. 14.>

제26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중구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③ 적립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 ④ 운용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 ⑤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02. 14.>

제2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재단은 기금관리 · 운용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재단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02. 14.>

제2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29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재단은 다음년도 사업계획 · 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비의 충당)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재단의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③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2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감독·보고·감사) 재단은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본부

제37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본부장) ① 본부장은 재단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부장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본부장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직원의 임명 등)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자문기구) 재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수당의 지급 등) 제41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직

제43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제46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제47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재단 및 구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에 게재한다.

부 칙 <제1호, 2021. 08. 27. >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2호, 2022. 02. 1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